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교통(주)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상완골 골절, 2) 우슬부 찰과상 및 십자인대 파열(의증)”로 요양 중 개호 신청한 경우.

(89-115호 89. 4. 17.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교통(주)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2. 22.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교통(주)소속 근로자로서 1988. 5. 13. 09 : 05경 업무상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좌 상완골 골절, 2) 우슬부 찰과상 및 우전박 십자인대 파열(의증)”로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에서 1988. 9. 9. 까지 입원 요양하였고 1988. 9. 10.부터 통원 요양하며 1988. 5. 15~ 6. 14까지 31일간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거, 개호를 청구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개호의 범위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호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입원 환자가 목발, 의자차 또는 자력으로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할 때는 주치의가 개호 소견을 허위로 발부하지 않는다는며 요양중 처가 24시간 간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개호 승인을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호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3. 16.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3. 24.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2. 16. 오세욱)
4. 개호 승인 신청서 사본(1988. 12. 19. 이○○)
5.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전의 쟁점을 심리한건대, 청구인은 ○○교통(주)소속 근로자로서 1988. 5. 13.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중인 동년 5. 15~6. 14까지 31일간 보험법에 의한 개호료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이 개호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기각 처리한바, 청구인의 개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개호 승인 신청서상에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골절, 2) 우슬관절 좌상으로 석고붕대로 인한 안정가교를 요하며 수상일로 부터

약 1개월간의 개호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고 개호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개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이상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면, 산재보험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119호) 제3장 제6조 6항 규정의 개호료 지급 대상은 “골절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자력으로 배뇨, 배변을 할 수 없는 자이고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동조 10항에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입원요양중인 환자, 다만 이상의 경우라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의 통상적인 간호에 의한 경우의 간호료는 입원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개호료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개호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전기(합)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전박부 이하 및 수부포함 심부 3도 화상, 체표면적의 36% (우측 견관절 이하 및 전흉부 액와부 포함, 우측 대퇴간부 이하 족부, 좌측 중족지관절 이하)”로 요양중 개호 신청한 경우.

(89-154호 89. 5. 22. 취소)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유○○

주소 : 대전직할시 서구 용문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동

주소 : ”

소속 : ○○전기(합)

주 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장이 1989. 1. 7. 자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개호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1. 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호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전기(합)소속 근로자로서 1987. 12.

21. 작업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좌측 전박부 이하 및 수부포함 심부 3도 화상, 체표면적의 36% (우측 견관절 이하 및 전흉부 액와부 포함, 우측 대퇴간부, 이하 족부, 좌측 중족지관절 이하)”로 근로복지공사산업재활원에서 요양증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1988. 12. 18.부터 1989. 2. 17. 까지 62일간 개호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배뇨 및 배변등의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개호인의 도움 요함”이나 원처분청 자문의는 “개호의 범위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이어서 개호료 지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개호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자문한 바 “환자의 상태는 자력에 의한 생활이 불편한 점은 인정되나 좌측 상하지를 이용한 자력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수상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개호범위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서 개호료 지급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상병 상태가 혼자힘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개호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 상태가 개호를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9. 4. 8. 유○○)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4. 13.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3. 7. 오○○)
4. 개호승인 신청서 사본(1988. 12. 19. 유○○)
5. 주치의 소견서 사본(1988. 12. 근로복지공사 산업재활원장)
6.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 사본(1989. 2. 16. 김○○)
7. 기타 타.

이상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가 1987. 12.

21. 작업중 피재되어 요양중 1988. 12. 18.부터 1989. 2. 17. 까지 62일간 개호 신청한데 대하여 원처분청의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데 1988. 12. 19. 자 피재자의 개호신청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개호의 범위는 미달됨”의 소견이고 노동부 자문의는 “자력에 의한 생활이 불편한 점은 인정되나 좌측 상하지를 이용한 자력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수상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임으로 개호범위에 미달된다”는 소견이나 원처분청에서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회한 결과 회시된 소견을 보면 “고압전기가 우측 견관절 주변으로 들어와서 양측발끝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에 필연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우측 견관절이개 및 우측 대퇴부 절단, 좌측 제1, 2족부 절단 및 제4, 5지 중수지 관절 이하 절단술을 시행하여 하반신 마비의 상태보다 오히려 신체손실이 높아서 이에 따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우측 상하지의 의지 착용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의 도움없이는 의수족 착용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생활을 의자차에 의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피재의 상병 상태는 우측 견관절이하 절단, 우측대퇴부 절단, 좌측 제4,5지 중수지관절 이하 절단, 좌측 제1, 2족지가 절단되어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을 위한 별도의 도구나 기구도 타인의 조력없이는 이용할 수 없어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법에 의한 개호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